

# 강원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산과학연구소 규정

[제정 1998.05.12.]

[개정 1999.04.26.]

[개정 2001.04.26.]

[개정 2005.05.17.]

[개정 2012.10.15.]

[개정 2016.04.25.]

[개정 2022.04.25.]

**제1조(명칭 및 위치)** 연구소의 명칭은 강원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속 수산과학연구소(이하“연구소”라 한다)로 하며, 강원도립대학교 내에 둔다.<개정 2016.4.25.>

**제2조(목적)** 이 규정은 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(기능)** 연구소는 수산 및 기초과학 응용기술의 연구개발과 활용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.

**제4조(사업)** 연구소의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수산 및 기초과학분야의 조사 및 연구
2. 연구논문집 발간 및 학술대회 개최
3. 대학 자체 연구과제 및 외부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사업
4. 기타 연구소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사항
5. 지역 산업체 및 연구소와 연계한 산·학·연 공동기술개발 사업 수행

**제5조(조직)** ① 연구소에 수산과학연구부, 산업공학연구부, 인문사회과학연구부를 둔다.  
② 행정업무처리 및 연구업무 보조를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사무직원을 연구소에 파견할 수 있으며, 연구조교를 둘 수 있다.  
③ 연구조교는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**제6조(사무분장)** 연구소의 각 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- ① 수산과학연구부는 어업 및 선박운항, 선박엔진, 수산양식 및 자원조성, 수산식품제조 및 보존, 해양 및 수서환경 등에 관한 연구
- ② 산업공학연구부는 선박공학, 기계공학, 토목공학, 전기·전자·통신, 정보통신, 환경공학, 산업디자인 등 포괄적인 기초산업공학 등에 관한 연구
- ③ 인문사회과학연구부는 지적학, 관광학 등 인문사회과학 영역에 관한 연구
- ④ 해양관계법제도, 해양레저 지역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산·학·연 공동기술개발 및 협동업무를 수행

**제7조(소장 및 임원)** ① 연구소에 소장 1인을 두고, 본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- ②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③ 각 부에 부장 1인을 두고, 부장은 본 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④ 간사는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**제8조(연구원등)** ① 연구소에 연구원, 특별연구원,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- ② 연구원은 본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12.10.15.>
- ③ 특별연구원은 조교수 이상의 자격이 있는 교외인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12.10.15.>
- ④ 보조연구원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임용한다.
- ⑤ 특별연구원과 보조연구원은 용역연구 등 목적에 의한 그 기간 동안에 임용하며, 해당 연구책임자는 기관부담금을 간접경비로 추가부담 한다.
- ⑥ 연구원 등의 인건비는 본 연구소 자체 재원으로 하지 않는다.

**제9조(운영위원회 구성)**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학처장, 산학협력처장, 산학협력단장 및 각 부장을 위원으로 하며,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

위촉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12.10.15.><개정 2016.4.25.><개정 2022.4.25.>

- ③ 위원회 위원 중에서 감사 1인을 둔다.
-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**제10조(위원회 심의사항)** ①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 및 예산, 결산에 관한 사항  
② 제 규정 제정 및 폐기  
③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
④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11조(회의)**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12조(재정 및 회계연도)** 연구소의 재정은 본 대학 보조금, 정부기관 및 단체의 보조금, 외부의 찬조금, 연구용역사업 및 기타수입으로 하며, 회계연도는 본 대학의 회계연도와 같다.

**제13조(운영세칙)**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.

#### 부 칙(1998. 5. 12.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규정 시행이전에 설치된 연구소는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.

#### 부 칙(1999. 4. 26.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1. 4. 26.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5. 5. 17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2. 10. 15.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 4. 25.)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 4. 25.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